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순 서

- 제1절 총칙
- 제2절 자문단 구성·운영
- 제3절 설계공모 준비
- 제4절 설계공모 공고
- 제5절 설계공모 심사
- 제6절 사후 설계관리
- 제7절 발주정보 공유

제1절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2013. 4. 9. 시장 방침 제92호로 마련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 방안」(건축기획과-7062호, 2013. 4.11. 참조)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 전(前)단계 업무에 활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기준과의 관계 등

- 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 나.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발주기관은 운영지침 제 17조에 따라 이 기준 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당해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 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적용 대상

이 기준은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산하 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자치구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일반 설계공모로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 가. 신축 및 증축 행위
- 나.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다. 기타 형태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4. 용어의 정의

- 가.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건립을 위하여 사업의 구상으로부터 설계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구성 및 운영, 예산확보 등의 업무를 말한다.
- 나. “설계공모 준비”란 기획을 거쳐 발주공고 전까지 설계공모를 위하여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심사결과 발표까지 이루어지는 지침서작성, 공모시 제출도서의 범위, 심사위원 선정, 심사방법 및 심사과정 공개방법 등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 다. “사후 설계관리”란 건축물의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자재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라. “주관부서”란 사업방침 수립 등 기획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마. “발주부서”란 사업의 전체 업무 중 용역발주, 계약, 용역감독 등 특정한 일부 업무만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바 “자문단”이란 정책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등에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2절 자문단 구성·운영

1. 자문단 구성 등

- 가. 자문단 구성
 - 1) 주관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문단을 구성한다.
 - 2) 자문단은 3~10명으로 구성한다.
 - 3)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함)은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비는 사업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중 공무원은 50% 미만으로 한다.

- 4)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가) 지역주민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로 당해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자
 - 나) 전문가는 건축계획 또는 당해 운영예정 프로그램 경험자. 다만 건축분야 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운영부서(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과 미리 협의한다.
 - 다) 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나. 운영 기간

자문단 운영기간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설계계약 또는 건축물 완공후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까지 중에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다. 업무 등의 공개

- 1) 자문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자문위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 참여할 자문위원에게 아래의 개인 정보가 공개됨을 미리 알리고 위원으로 선정시 붙임1의 동의서를 받는다.
 - 이름, 나이, 현재직업(소속, 직위), 활동사항

2. 자문단 운영

- 가. 자문단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하되, 사업진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활발한 자문단 활동을 위하여 자문단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위원장은 자문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라. 회의록 작성
 -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자문단의 기능(역할)

자문단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문위원은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 회의 또는 의견제시를 위한 자료준비, 검토 및 자문을 한다.

가. 과업의 범위와 사업 추진 방향

나. 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전조사

- 수요조사,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선정 등

다. 부지선정, 운영 프로그램

라. 적정 건축규모와 사업비 추정

마. 그 밖에 사업진행 및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예산 반영 등

주관부서는 사업방침이 결정되고 사업규모와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자문단 자문을 거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외에 입상작에게 지급할 비용을 포함하여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반영한다.

가. 서울시 재원사업 또는 지원사업(특별교부금 요청사업 포함)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가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자치행정과)에 요청한다.(붙임2 참조)

나. 자치구 재원 사업

자치구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지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붙임2의 자문절차에 준하여 추진한다.

제3절 설계공모 준비

1. 설계공모 참여설계자 범위

가.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의 자와 협업할 수 있다.

나. 건축설계산업 발전과 능력있는 건축가 육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연간 발주 건수의 20%는 신진건축가에게 우선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진건축가의 범위는 나이(출생년도), 개업년차 또는 졸업년차, 건축사 취득기간 또는 설계실무기간 등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정한다.

◎ 사 례

- 국내
 - 2011 서울시공공건축가 선발시 신진건축가를 만 45세 이하로 구분
 - 설계공모시 SH공사, LH공사, 포항시가 만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신진건축가 대상 시범사업 만45세로 운용
- 일본 35세 미만, 유럽 40세 이하, 네덜란드 졸업후 4년 이내 등

다. 사업에 3인 이상 다수의 설계자를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협업의 대상, 방법, 조건 등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2. 약식 공모 및 심사의 활성화

설계자의 경제적 부담과 발주기관의 심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가. 제출도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설계자간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약식공모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도서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수의 계약 활성화

사업특성과 설계기간 등을 감안하여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건축물 수준이 향상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

가. 발주기관은 아래의 예와 같이 능력이 검증된 자 중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 1)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 2)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3)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 4)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 5)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나. 발주기관은 위 “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건축가 육성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위 “가”에서 정하지 않은 자와 계약할 수 있다.

4. 설계공모 종류

설계공모는 참여 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설계공모안 제출도서의 범위

가. 제출도서는 사회적 비용의 경감, 지속가능한 정책 부응 등을 감안하여 설계작품 심사를 위한 최소한으로 한다.

- 1) 기본도면 : 건축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2) 설계설명서 : 기본도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 특별히 설계 컨셉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면과 중복 되지 아니할 것. 기본도면에 설계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 3) 3차원 이미지 : 3차원 형상으로 건축물을 이해시키기 위해 건축사 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용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이미지
- 4) 매스모형 : 건축물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무칼라 매스로 제작한 모형

나. 사업의 특성과 규모,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또는 자문단과 협의하여 아래 예시안을 참고하여 정한다. 다만, 설계비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발주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설계비 구분 (부가세 포함)	제출 도서의 범위	기 타
1억원 이하	- 기본도면(설계설명서 포함)A3 10매 이내 - A1도판 2매	도판과 도면중 발주기관이 선택한다.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 기본도면(설계설명서 포함)A3 20매 이내 - 3차원이미지는 제한된 매수내에서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기본도면(설계설명서 포함)A3 20매 이내 - 설비·구조 개념도, 3차원이미지 및 매스모형은 사업성질과 규모에 따라 발주기관이 선택한다	

다. 매스모형이나 3차원이미지 외 상세모형이나 조감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선작과 입상작에 대하여 요청하도록 하되, 실비 지급 여부 등은 설계공모시 명기한다.

6. 설계 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가.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면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 각 호와 같다.

-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
- 4)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건축분야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 6) 발주하는 건축물이 있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

나.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내·외 예비심사위원을 추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 1) 전문가: 서울시가 제공하는 인재 Pool명단이나 별도 공모 등을 통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
- 2) 지역주민: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자생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
- 3) 현직 공무원: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다. 심사위원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 전에 공개한다.

제4절 설계공모 공고

1. 입찰공고

가. 발주기관은 운영지침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서울시 지정 사이트에도 게재되도록 협조한다.

나.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시급성, 설계공모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설계 심사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14일 이상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설계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참가 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공고 내용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그 답변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시 별도로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질의 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의 경우, 그 밖에 참가등록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 등록자는 공고 일정상 제출 기한내 공모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다.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5절 설계공모안 심사

1. 심사위원회 구성 등

- 가.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약식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
- 다. 심사위원은 발주기관의 장이 “3절 6. 설계심사위원의 자격”중에서 선정하며,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분야별 구성 비율은 발주기관이 정하되,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한다.

2. 심사위원회 운영

- 가.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다. 발주기관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라.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 마.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심사기준 또는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바. 발주기관은(발주기관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 사.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한 설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 1) 설명시간이나 질의 응답시간은 응모작품 수와 심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 2) 응모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줄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시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아. 위원장은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공개한다.
 - 1) 응모한 작품 현황, 심사과정 등 전반에 대한 총평
 - 2) 심사방법, 심사결과,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
- 자.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3. 설계공모안 평가

- 가. 설계 공모안 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 방법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 발주기관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운영지침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4. 설계자의 심사 참여

- 가. 설계자는 설계공모시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응모안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나. 설명할 자료는 설계응모시 제출한 도서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 다. PPT로 설명할 경우에는 미리 PPT의 사양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한한다.

5. 설계 심사결과와 기록 등

- 가. 발주기관은 설계심사자 선정, 설계 공모, 작품 응모, 응모작품 심사 전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발주기관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순수건축비 100억 이상), 자치구 신청사 건립 등 특히 기록으로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 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사이트에도 게재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설계심사 자료 등을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로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3 예시 참조)
 - 1) 설계개요, 전체 응모 작품수와 입상작(당선작 및 입선작 등) 현황
 - 2) 입상작품과 당해 작품 설계자, 회사이름
 - 3) 참여 심사위원, 심사평

6.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 가. 발주기관은 건축가의 설계공모 참여환경 조성과 저변 확대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 창작동기 부여와 설계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안의 작성 비용 일부를 보상한다.
- 나. 공모안의 작성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 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 다. 발주기관은 “나”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을 일부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 1) 낙찰 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4/10, 3/10, 2/10, 1/10을 지급
 - 2) 낙찰 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4/10, 3/10, 2/10를 지급
 - 3) 낙찰 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4/10, 3/10을 지급
 - 4) 낙찰 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을 지급
- 라. 사업계획의 변동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마. 발주기관은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낙찰 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 발주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고, 서울시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심사결과 등을 게재한다.
- 다. 발주기관은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절 사후 설계관리 업무

1. 설계자의 업무 등

가. 발주기관은 설계자가 감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일관성 유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공사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

- 1) 설계도서의 해석
- 2) 현장여건 변화 및 자재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3) 건축외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나. 설계자는 자문 또는 의견(이하 이 절에서 “자문 등”이라 한다.)을 제시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한 경우에는 회의 주관 기관의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가 지급 등

가. 발주기관은 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현장방문 또는 자문 등을 한 때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다목 규정에 의한 사후설계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는 같은 기준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행 업무가 설계 당사자의 현장 방문 또는 자문위원회 참석 등 업무가 단순하거나 단기성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1) 현장 방문의 경우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1일 인건비에 준한다.
- 2) 자문회의 참석 등의 경우 : 발주기관의 위원회 또는 전문가 수당 지급의 예에 준한다.

다.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방계약법령이나 당초 설계계약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외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에 적법하여야 한다.

제7절 발주정보 공유

1. 설계 발주정보의 제공

가. 주관부서는 매년 1월까지 당해 년도 설계 발주 정보를 서울시 건축 전용사이트 또는 서울시 지정 사이트에 자료를 공개하거나, 월1회 수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번	발주기관	사업명	대지위치	건물용도	연면적(㎡)	사업비(천원)		설계발주(예정)현황	
						공사비	설계비	발주방법	발주시기
1									

나. 주관부서는 아래 사업의 단계에서는 즉시 서울시 건축전용사이트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서울시 지정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설계공모 발주 공고시 : 공고문 및 설계공모 지침 등 공모자료
- 2)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공개시 : 심사위원 명단(이름, 소속, 직위)
- 3) 제5절5호다목에 의한 설계심사 자료

2. 설계 발주정보 제공의 경과규정

가. 주관부서는 건축전용사이트 구축 전까지는 위 “가”와 “나”의 정보를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로 통보한다.

나.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발주기관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서울시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붙임 1. 자문위원 동의서(양식)

2. 특별교부금 신청관련 전문가그룹 자문절차
3. 설계공모 심사결과 제출 자료(예시)

【붙임1】 자문위원 동의서(양식)

자문위원 위촉 및 개인정보 공개동의서

본인은 『 』의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동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은 『 』 사업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본인은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이름, 나이, 현재 직업 (소속회사, 직위 포함), 활동사항이 공개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붙임2】 특별교부금 신청관련 전문가그룹 자문절차

시 전문가그룹의 자문 실시

- 큰 거
 - 공공건축물·도로·공원분야 특별교부금 지원절차 매뉴얼 (행정과-17024, 2013.7.7)
- 목 적
 - 특별교부금 교부시 자치구 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시 역점시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통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적용대상(공공건축물) : 신축, 증축, 리모델링, 기타 형태변경
- 분야별 신청요건(市 역점시책 반영) 및 지원절차 내역



○ 주요 업무처리 흐름도

기 획	설 계	공 사
<p>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 참여</p> <p>① 자문단 구성·운영(공개원칙) (시민, 전문가, 공무원 3~10명) * 공공건축가 선정은 市 도시공간개선단에 사전요청 - 과업의 범위와 사업추진 방향 검토 - 부지선정, 시설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주민이용수요 등 사전절차 반영 -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 등</p> <p>② 시 역점사업과 연계 - 저류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도시텃밭 등</p> <p>③ 예산반영 - 공사보상설계비 외에 설계 보상비, 심사비 반영</p>	<p>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p> <p>① 설계공모 : 약식공모 - 1억원 이하 · 가급적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킨 지명입찰 - 1억원 초과 ·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실질적인 역할수행 - 시비 투입 100억원이상 · 설계공모 前 시 건축정책 위원회에 발주 자문</p> <p>② 설계공모의 공고 - 서울시 사이트에도 게재</p> <p>③ 설계공모안 심사(공개원칙) - 입상자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p> <p>④ 설계시행 - 최초 기획 의도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작성여부 - 실시설계시 세부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p>	<p>공사까지 설계자 참여</p> <p>① 사후설계관리 - 설계컨셉 실현 - 설계 변경시 협의 - 설계 의도대로 공사 시행 여부 검토 등 * 공사 진행 사항 분기별 보고(자치구→市 관련부서) * 市(관련부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검토 및 자치구통보</p> <p>② 감리자 선정시 설계자에 가점부여 및 공동참여 권장 - 설계자의 설계의도 반영 - 사후관리 참여 설계자 보상</p> <p>* 자문 등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공공건축가는 가급적 사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완료시까지 계속 참여 유도</p>

- ▶ 공 공 건 축 가 : 교수, 건축가 등 129명으로 구성
- ▶ 자문단운영기간 : 사업구상단계부터 완공 후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시까지

【붙임3】 설계공모 심사결과 제출 자료(예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공모 심사 개요

1. 사업 개요

- 가. 위 치 : 00구 ☆#동 204-4외 1필지(204-8)
- 나. 대지면적 : 589㎡, 연면적 약 1,200㎡
- 다. 건물규모 : 지상3층, 지하1층
- 라.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마. 층별 시설계획 : 지하1층 - 대강당 및 체육시설
지상1층 - 북카페 등
지상2층 - 동아리방 및 프로그램실 등
지상3층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 설계공모 개요

- 가. 공 모 명 :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경기(아이디어)공모
- 나. 공모방식 : 공개경쟁
- 다. 설계용역비 : 121,495천원
- 라. 응모 현황 : 참여등록 24명, 작품접수 17명

3. 작품심사 개요

- 가. 심사일시 : 2013. 4.18.(목) 14:00~16:00

나. 심사위원 : 5명

- 123건축 김##
- ABC건축 이○○◇
- 가나다엔지니어링 박♣◎
- 1234스튜디오 가◆■
- 가나다건축 나◎□



<우수작>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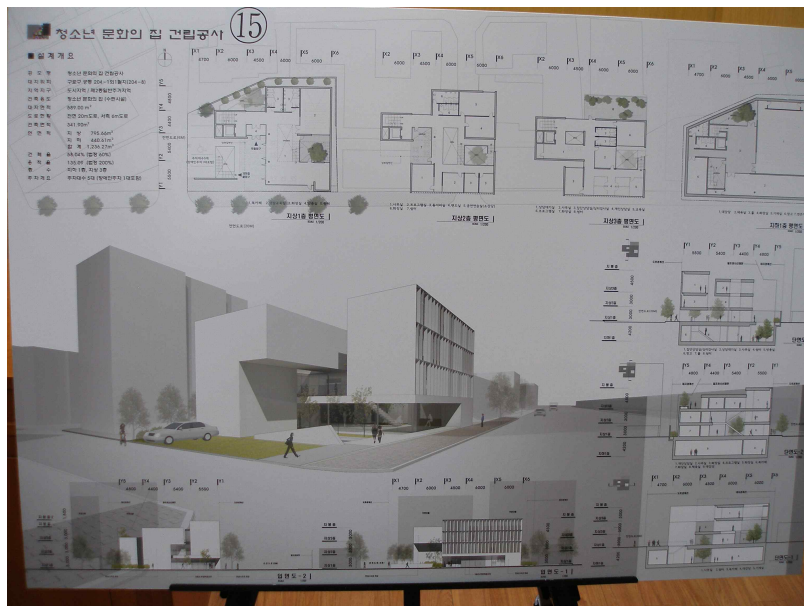
4. 작품심사 결과

당 선 작	(주)가나다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대표 가나다
우 수 작	나가다건축사사무소 대표 다나가라
가 작	1234건축사사무소 대표 123

5. 당선작에 대한 심사 의견

- 외벽(전면)의 단조로움을 추후 설계용역 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알맞은 밝고 역동적인 계획 필요
- 청소년 및 구로구의 이미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외벽재료 및 색상계획

제공부서 : 00구 건축과, 문의 02-8**-2***



<당선작>